

2014년 8월 23일 시행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책형	시험과목	헌법(40문), 민법(40문), 형법(40문)
①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4. 8. 23.(토) 15: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4. 8. 25.(월) 12:00 ~ 2014. 8. 27.(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4. 9. 5.(금)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헌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된 것에 그치고, 법인·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함이 원칙이다.
- ③ 인권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④ 인권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직 등을 겸직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에 관한 당사자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위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 2】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도로점용자에게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나. 사법상 채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국가의 납입 고지에 일반 사법(민법)상의 최고와는 달리 종국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수 있는 사법상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다. 지목에 관한 등록이나 등록변경 또는 등록의 정정은 단순히 토지행정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며,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은 재산권의 한 내포로 봄이 상당하다.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신규 공급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사실상 고액의 값으로 양도·양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형성된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마.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일정한 동산문화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배제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며, 이러한 기회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가. 나. 마.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나. 라. ⑤ 다. 마.

【문 3】헌법소원의 대상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 ② 검사조사실에서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 ③ 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미납공납금 완납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 ④ 부여군수의 감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적 업무행위이고,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도 이를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부여군수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 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도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4】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②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③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조직의 일부,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 ⑤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문 5】 병역의 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입영을 위해 개별이동 중인 자를 국가유공자의 대상에서 제외한 병역법 제75조 제1항이 위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제1국민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7세까지만 단기 국외여행을 허용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경찰대학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청구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입학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역의무 이행이 이유가 되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하사나 병으로 근무한 군인들이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들과 전혀 다름없는 군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급이 낮거나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 및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6】 국회의 회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필요적으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③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7】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의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재산상의 부수적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임용당시의 공무원법상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강한 공익상의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년을 조정할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표방하는 단체에 가입·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문 8】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 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단순 위헌의견 1인, 일부 위헌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2인,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이 5인인 경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내야 한다.
- ③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 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 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문 9】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은 당연한 전제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 ②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 ③ 국민이 재판을 통하여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소한 범원조직법에 의하여 법원이 설립되고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에 의하여 재판관할이 확정되는 등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재판청구권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 ④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입법이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 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가 그 심사기준이 된다.

【문10】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에게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할 수 있다.
- ③ 국회에 청원을 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를 행정기관 등에 청원을 하는 자와 차별하는 것이나 행정부 등에 대한 청원은 당해 기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청원과는 달리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청원은 청원법 제5조의 청원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계사유로 삼는 것은 청원을 하였다든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입법자는 수용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 청원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문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②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 ③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 ④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거부의 대상이 된다.
- ⑤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문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 ② 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 ③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야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경우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13】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도주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효과적인 도주 방지 수단이 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할 뿐으로서 이는 행형의 정당한 목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수형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②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⑤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인맥지수 이용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문14】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고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 ②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 ③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에만 상속세 인적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속법 조항은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 ④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의 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국을 상대로 정부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회부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재외국민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문15】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 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
- ②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 자유위임을 근본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에 대한 상임위원회 전임(사·보임)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이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는 청구인의 종전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격을 가진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확인 및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 ④ 국회의장이 의안에 관한 투표가 과연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실관계하에서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투표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결과 국회의장에게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문16】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인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문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헌법적인 차원에서 직접민주제를 직접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닌다 할 것이다.
- ②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이기도 하다.
- ③ 주민소환은 주민이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중에 주민의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제도이고, 이는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와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자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④ 우리의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사법적인 절차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⑤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므로, 이 점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서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주민소환제라 하더라도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과잉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예외로서의 주민소환제는 원칙으로서의 대의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문22】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원위원회란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인바,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국회법에서 명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 ③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되,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법에서 15인으로 정하고 있다.
- 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의 경우 폐회 중 최소한 월 2회(정보위원회는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23】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의 전제성 구비 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 ② 제청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률조항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위헌제청을 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모든 사건이나 앞으로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행할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리상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자에 의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가진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문2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및 제8항 등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조화적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 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25】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인용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소추사유로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 ③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관 7명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재판관 5명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인 경우, 재판관 5명의 의견이 다수의견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종전 사건과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당해 사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26】교육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는 사립학교운영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②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에 국가개입은 금지된다.
- ③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적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의 배제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지방교육자치도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과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

【문27】다음 중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 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 제72조에 따라 특정 정책과 결합하여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허용된다.
- 다. 헌법 제72조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와 달리 국민투표 결과의 확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국민투표법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마. 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마.
- ⑤ 다. 라. 마.

【문28】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회의원 또는 국회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④ 헌법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이를 강화하여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문29】 지방자치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읍무즈맨의 위촉(임명)·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 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
- ④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한 예산 관련 행위는 위법하나,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하여 해당 예산안 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감사기관의 감사, 주민의 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와 달리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 주민투표소송을 배제하는 것은,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문30】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은 일반사면의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②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③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제한되지는 아니한다.
- 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31】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제한 등에 관하여 내린 결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인터넷 매체의 특성 및 기능 등에 비추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 ④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아니라 전형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문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만을 말한다.
- ②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전심절차 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 계류중에 전심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 ③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 만큼 직접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 절차를 요구하는 등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문33】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주4·3위원회의 수행자 및 무장유격대 가담자를 포함한 희생자 결정은 제주4·3사건 당시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두 당사자 중 일방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제주4·3사건의 진압 군경들은 논리필연적으로 제주도 주민들의 희생을 초래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하였던 군인이나 그 유족들의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의 당부를 다룰 자기관련성이 있다.
- ②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신규 변리사의 수요를 충당하는 두 개의 공급원으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개의 공급원은 어떤 형태와 정도에 의해서든 개념상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에 의한 신규 변리사의 충원이 중단된다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늘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합격자에 의한 충원의 기회는 개념상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③ 위탁급식업자인 청구인들은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위탁급식사업을 행하고 있는 분야 중 특별히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며 학교위탁급식사업으로 취득하였던 영업상 이익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것이므로 현실적인 손해 발생이 예상되며, 이러한 손해의 발생은 단순한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내지 법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의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무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⑤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34】재판의 공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라든가 달리 볼 수 없다.
- ②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제정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 안에서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 형사소송규칙 규정이 헌법상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건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

【문35】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 대한 납본제도는 그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 관계없으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다.
- ②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 ④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 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문36】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그들의 사업소득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혼인이나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동사업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와 상충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②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한 것은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③ 한정승인제도와 상속포기제도는 그 방식 및 법률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집단과 상속포기신고를 한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제도만을 규정하고 특별상속포기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조항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신고가 아닌 상속포기신고를 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에 따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과 기산점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한 것은,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모부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문37】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무효임을 인정하고 있다.
- ③ 헌법전문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보장의 근거가 되므로,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으로부터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 있다.
- ④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 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현행 헌법전문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문38】 다음 중 종교의 자유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가.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 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 나. 공교육체계의 헌법적 도입과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 현실 및 평준화정책이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사정,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의하여 학생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헌적 소지가 강하다.
- 다.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이고,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자의 기본권적 가치에 관한 추상적 이익형량을 통하여 우선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 라. 사학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는 설립자나 학교법인의 종교적·세계관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즉 ‘종립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수업을 할 자유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마. 공교육체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그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현실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사립학교에 학생선발권을 가급적 전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바. 종립학교에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나 운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 종립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아. 기본권규정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만,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므로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기부행위로 정의 중에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조항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④ 인터넷게임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는 구별되므로 수형자에 대한 집견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집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교도소장이 그 수형자와 변호사의 집견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40】 영전의 수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영전의 수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는 사항이며 헌법은 국민에게 영전을 수여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 ②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하고 만일 이를 패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 ③ 헌법 제89조는 영전수여를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 ④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법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서훈 취소의 대상이 된다.
- 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우방원수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에 게만 수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이다.

【문 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위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문 6】 다음 중 판례와 다른 것은?

- ①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 ②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 ③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⑤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문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상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규정은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집합건물에도 적용됨을 규정하는 것인데, 위 민법 각 규정에 따른 담보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대지부분의 권리상의 하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 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인도’는 인도의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건축 후 최초 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 8】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③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특별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⑤ 위약금이 위약별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당연히 위약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9】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부부 일방의 혼인 중 제3자에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므로,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 ㉢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는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다.
- ㉣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 ① ㉠, ㉡, ㉢ ② ㉠, ㉢ ③ ㉡, ㉣
④ ㉡, ㉢, ㉤ ⑤ ㉢, ㉤

【문10】 협의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성년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 ㉢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를 부(父)로 정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할 수 있다.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주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조서는 양육비 지급의 집행권원이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1】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②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③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12】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합의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13】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피담보채무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③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그 변경등기는 물상보증인이 이후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④ 상사시효 대상인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된 경우, 그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인수채무는 상사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다.
- ⑤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14】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 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乙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丙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丁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甲은 丙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甲은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문15】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행하여진 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 ②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③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대지와 乙이 신축한 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건물을 함께 매수한 다음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위 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이 위 대지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
- ④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甲은 법정지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대지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 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문16】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것은?

- ①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②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고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소멸된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④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 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문17】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과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없다.
- ②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 ④ 피해자 손해가 200만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60만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98만원이다.
- ⑤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문18】 도급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는 지체상금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 ②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 ③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일 것이나 교환가치 차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볼 수 있다.
- ④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19】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③ A가 B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받았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A가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C에게 양도하고 C 앞으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후에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A의 채권자 D에게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이 소멸할 때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문20】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 ③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문21】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261조에 의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22】 채권자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③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위 수익자 등은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문23】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설립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설립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재단법인은 제3자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란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권의 제한은 약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 ④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문24】 이행불능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 ②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비록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다.

【문25】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 ② 전세권이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 ④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그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2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한 민법 제141조의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와 달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27】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시효의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 시효기간의 개시에 대한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 없다.
- ②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채권양도인이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 때로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 ④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시효기간은 개별적인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연장되었다고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문28】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 ⑤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문3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 ㉡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
- ㉢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4】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된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이 발생한 때,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기산한다.

【문3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 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6】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 ㉠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기간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측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그 해지권이 인정된다.
- ㉤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부사장 등의 직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회사의 계속적 채무에 보증을 하였는데 회사 경영진 내부의 마찰이 있는데다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7】 계약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질을 보유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 중기를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중기가 매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그 감가비 상당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취득한 순수입에는 목적물 자체의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수리비 등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의 순수입에서 현금자본의 투입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8】 다음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에 따른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 ②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등기는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③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다.
- ④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문39】 다음 중복 등재된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이 경우 나중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③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에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 ④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고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로,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등기인 경우에는 멸실 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로 각 등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
- ⑤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일자나 각 회복된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나 전 등기의 원인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문4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나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A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 경우 위 종중의 대표자 乙은 비록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 제기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乙 개인 명의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甲이 乙, 丙과 함께 X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는 乙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丁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④ 공유토지의 2/3 지분권자 甲이 다른 공유자인 1/3 지분권자 乙과 협의없이 그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고 있는 乙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으로부터 그 특정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제3자도 乙에 대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문 1】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면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 ㉡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아 실제 참여하였으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참여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차용금 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 ㉣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뇌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문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여 乙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 ④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혼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⑤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3】 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 ②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졌고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 ③ 동업자들이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한 경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서 여러 회사가 각자 입찰에 참가하되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⑤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다른 입찰자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그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그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입찰방해미수죄로 처벌해야 된다.

【문 4】 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효력범위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1개의 행위가 현행 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현행 형법의 처벌이 구법에 비하여 중한 경우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 형벌법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 간통을 벌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민과 간통한 경우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 외국인이 한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우표를 위조하였다면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 ㉤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경하여진 경우 형의 집행을 감면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형 법 40문】

①책형

【문 5】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내란죄는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 내란죄는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은 내란죄의 보호범의 등에 비추어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 ㉣ 간첩행위는 적국에 알리기 위하여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이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도 간첩행위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 날치기 수범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죄나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촉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단일한 강도죄가 성립할 뿐이고, 폭행·협박을 당한 피해자별로 강도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행위의 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이거나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7】 성폭속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 판매죄에 해당한다.
- ㉡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 ㉢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가진다.
- ㉣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 가해자는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하면 간통죄도 성립한다.
-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 ① 5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8】 문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되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담뱃갑은 사문서 등의 위조죄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세금수납영수증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현출이 가능하고 특수매체의 발달로 그 저장에 영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한다.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9】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고소를 한 목적이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었다면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
- ㉤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으므로, 면허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0】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으로 국립병원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 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다음 그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인장위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친구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결제에 사용한 다음 매출전표에 그 친구의 서명까지 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말소한 다음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B에의 매매나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1】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 ㉢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 ㉤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③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④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⑤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두 가지 행위 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되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 ②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용하는 역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③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고,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한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위조된 유가증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⑤ 피고인이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하였다면, 그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문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범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함으로써 이미 외관상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더라도, 피해자가 각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탓으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회사들에게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는 실제적 경합범 관계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②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위와 같은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분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16】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변조한 오락기 기판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락실 업주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 ㉡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남겨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다.
- ㉢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으나, 공중위생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원들은 공중위생영업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진정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보호자가 의학적 충고에 반하여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보호자와 전문의, 주치의 모두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문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2012. 12. 18. 형법개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 및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
- ㉡ 2012. 12. 18.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 ㉢ 판례는 개정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에 대한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 ㉣ 형법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 강간치상죄가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8】 결과적 가중범, 과실범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②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숙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호텔 객실로 유인하여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⑤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문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무원비밀누설죄는 행위 당시 공무원이었을 것을 요하는 신분범이다.
- ㉡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법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공소장을 접수한 법원공무원이 공소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린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다.
- ㉣ 검사가 상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방해한 경우 인권옹호적무방해죄로 처벌된다.
- ㉤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도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에는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40문】

①책형

【문21】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 ㉡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면 법원은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피고인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계약상의 부조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한다.

- ① ㉠, ㉡, ㉢ ② ㉠, ㉡, ㉣ ③ ㉡, ㉣
④ ㉠, ㉢ ⑤ ㉣

【문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이를 게재하였더라도,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의 관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 ㉣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하고,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40문】

①책형

【문25】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의 규정 취지 및 해석상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행을, 나머지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한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납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도 포함한다.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5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6】 형법상 자격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 또는 상실되는 자격에는 피선거권이 포함되지만 선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처벌법규가 법정형으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없다.
- ㉢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 병과된 자격정지기간은 자격정지와 병과된 형의 집행일부터 기산한다.
- ㉣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상한은 15년이다.
- ㉤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7】 다음 설명 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공모하고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
- ㉡ 피고인이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 ㉢ 피고인이 허위의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변론기일 소환장 및 선고기일 소환장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게 대신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령하여 전달치 않는 방법으로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모두 사망한 경우
-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8】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을 불가능케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하였다면 전차인의 전차장소에서의 음식점 영업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행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9】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주죄에서 체포, 구금의 적법성은 형식적 적법성을 의미하며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결구금된 자가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 체포 또한 위법하다 할지라도 도주죄의 주체가 된다.
- ②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어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자기비호의 연장에 불과하여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30】다음 설명 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고,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 ㉡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학생회관에 침입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경우
- ㉢ 사체 이장에 앞서 당국의 신고하여야 함을 모르고 이장한 경우
- ㉣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였고, 사전에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얻은 경우
- ㉤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려 군청 산림과에 갔으나 관광지 조성승인이 났으니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군수 명의로 산림법배제확인서까지 받아 산림훼손행위를 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도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2】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
- ② 피고인이 권원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 열린 감을 그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수확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고속버스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하지 못한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④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각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에 따라 자동차 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문33】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피고인이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의사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 ④ 공휴일 또는 야간에 구치소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염화칼륨 주입행위는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하므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 ② 명정(酩酊)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한 법률상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
- ③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 ④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 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35】 교사범 및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중범에게 뇌물 중의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에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정하여야 한다.
- ㉡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중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① ㉠ ② ㉠, ㉡, ㉢ ③ ㉠, ㉡, ㉢
④ ㉠, ㉢ ⑤ ㉡, ㉢, ㉣

【문36】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읍세트 인쇄기로 한국은행권을 위조하려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사진을 찍어 인화하였다면 통화위조 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부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준비한 경우 강간예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예비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방조한 자는 예비죄에 정한 형을 감면한다.
- ④ 간수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할 것을 준비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 ⑤ 기수의 고의로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강도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문37】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비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그 보도가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그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 ㉣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제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문38】 다음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목적범
- ㉡ 비밀침해죄 - 침해범
- ㉢ 연소죄 - 결과적 가중범
- ㉣ 존속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 ㉤ 음화판매죄 - 편면적 대항범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9】 다음 장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그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 장물죄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에게서는 강도예비죄가 성립할 뿐 장물운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문4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중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②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 甲 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갔다면,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014년 8월 23일 시행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헌법(40문), 민법(40문), 형법(4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4. 8. 23.(토) 15: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4. 8. 25.(월) 12:00 ~ 2014. 8. 27.(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4. 9. 5.(금)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헌법소원의 대상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 ② 검사조사실에서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 ③ 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미납공납금 완납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 ④ 부여군수의 감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적 업무행위이고,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도 이를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부여군수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 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도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2】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②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③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조직의 일부,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 ⑤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문 3】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된 것에 그치고, 법인·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함이 원칙이다.
- ③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④ 인권위원은 국회의원의 직 등을 겸직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에 관한 당사자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위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 4】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도로점용자에게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화 및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나. 사법상 채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국가의 납입 고지에 일반 사법(민법)상의 최고와는 달리 중구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중구적으로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수 있는 사법상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다. 지목에 관한 등록이나 등록변경 또는 등록의 정정은 단순히 토지행정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며,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은 재산권의 한 내포로 봄이 상당하다.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신규 공급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사실상 고액의 값으로 양도·양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형성된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마.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일정한 동산문화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배제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며, 이러한 기회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가. 나. 마.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나. 라. ⑤ 다. 마.

【문 5】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의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재산상의 부수적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임용당시의 공무원법상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강한 공익상의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년을 조정할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표방하는 단체에 가입·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만 하면 그가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문 6】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 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단순 위헌의견 1인, 일부 위헌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2인,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이 5인인 경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내야 한다.
- ③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 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급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문 7】 병역의 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입영을 위해 개별이동 중인 자를 국가유공자의 대상에서 제외한 병역법 제75조 제1항이 위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제1국민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7세까지만 단기 국외여행을 허용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경찰대학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청구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입학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역의무 이행이 이유가 되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하사나 병으로 근무한 군인들이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들과 전혀 다름없는 군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급이 낮거나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 및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8】 국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필요적으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③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②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 ③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 ④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거부의 대상이 된다.
- ⑤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문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 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 ② 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 ③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야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존재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경우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11】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은 당연한 전제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 ②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 ③ 국민이 재판을 통하여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소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법원이 설립되고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에 의하여 재판관할이 확정되는 등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재판청구권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 ④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입법이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 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형성의 범위를 이탈했는지 여부가 그 심사기준이 된다.

【문12】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에게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할 수 있다.
- ③ 국회에 청원을 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를 행정기관 등에 청원을 하는 자와 차별하는 것이나 행정부 등에 대한 청원은 당해 기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청원과는 달리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청원은 청원법 제5조의 청원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입법자는 수용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 청원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문13】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 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
- ②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 자유위임을 근본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의 청구인에 대한 상임위원회 전임(사·보임)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이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는 청구인의 종전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청구인들이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확인 및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 ④ 국회의장이 의안에 관한 투표가 과연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실관계하에서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투표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결과 국회의장에게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문14】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인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문15】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도주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효과적인 도주 방지 수단이 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할 뿐으로서 이는 행형의 정당한 목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수형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②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⑤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인맥지수 이용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문16】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고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 ②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 ③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에만 상속세 인적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속법 조항은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 ④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의 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국을 상대로 정부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회부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재외국민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문17】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한 것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장의 인사권 아래 있는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원칙에 어긋나고 실질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②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③ 보안처분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존재하므로 각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범위 내지 한계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 ④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후 불복의 기회도 주는 등 일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있어 토지소유자들 중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 내지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주민들의 의견취취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분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문1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헌법재판소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 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를 유족구조금 지급에서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구조피해자가 직계혈족의 관계가 있는 가해자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마.
- ③ 나. 다. 마. ④ 나. 라. 마.
- ⑤ 다. 라. 마.

【문19】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등법원장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녹음한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 ③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규정은,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적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의 본질상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고 수용자의 발송서신에 대하여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상대적 검열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 교도행정의 방식일 뿐이어서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문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진과할 자유도 포함된다.
- ②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하나, 그 중에서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언론의 자유이다.
- ③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글을 쓰고자 하는 자와 다른 매체에 글을 쓰는 자를 차별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취급에 관한 판단은 익명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 ⑤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문21】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의 전제성 구비 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 ② 제청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률조항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위헌제청을 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모든 사건이나 앞으로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행할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리상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자에 의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제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제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가진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문2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및 제8항 등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조화적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 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2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헌법적인 차원에서 직접민주제를 직접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닌다 할 것이다.
- ②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이기도 하다.
- ③ 주민소환은 주민이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중에 주민의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제도이고, 이는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자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④ 우리의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사법적인 절차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⑤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므로, 이 점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서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주민소환제라 하더라도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과잉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예외로서의 주민소환제는 원칙으로서의 대의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문24】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원위원회란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인바,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국회법에서 명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 ③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되,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법에서 15인으로 정하고 있다.
- 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의 경우 폐회 중 최소한 월 2회(정보위원회는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25】 다음 중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 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 제72조에 따라 특정 정책과 결합하여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허용된다.
- 다. 헌법 제72조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와 달리 국민투표 결과의 확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국민투표법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마. 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문26】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회의원 또는 국회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④ 헌법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이를 강화하여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문27】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인용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소추사유로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 ③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관 7명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재판관 5명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인 경우, 재판관 5명의 의견이 다수의견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종전 사건과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당해 사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28】 교육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는 사립학교운영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②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에 국가개입은 금지된다.
- ③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적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의 배제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지방교육자치도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과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

【문29】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제한 등에 관하여 내린 결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인터넷 매체의 특성 및 기능 등에 비추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 ④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아니라 전형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문30】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만을 말한다.
- ②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전심절차 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 계류중에 전심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 ③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 만큼 직접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 절차를 요구하는 등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문31】지방자치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읍부즈맨의 위촉(임명)·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조례안제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 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
- ④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한 예산 관련 행위는 위법하나,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하여 해당 예산안 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감사기관의 감사, 주민의 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와 달리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 주민투표소송을 배제하는 것은,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문32】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은 일반사면의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②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③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제한되지는 아니한다.
- 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33】 재판의 공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② 법원이 범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 안에서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 형사소송규칙 규정이 헌법상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

【문34】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 대한 납본제도는 그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 관계없으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다.
- ②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 ④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 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문35】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주4·3위원회의 수형자 및 무장유격대 가담자를 포함한 희생자 결정은 제주4·3사건 당시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두 당사자 중 일방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제주4·3사건의 진압 군경들은 논리필연적으로 제주도 주민들의 희생을 초래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하였던 군인이나 그 유족들의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의 당부를 다룰 자기관련성이 있다.
- ②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신규 변리사의 수요를 충당하는 두 개의 공급원으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개의 공급원은 어떤 형태와 정도에 의해서든 개념상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에 의한 신규 변리사의 충원이 중단된다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늘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합격자에 의한 충원의 기회는 개념상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③ 위탁급식업자인 청구인들은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위탁급식사업을 행하고 있는 분야 중 특별히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며 학교위탁급식사업으로 취득하였던 영업상 이익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것이므로 현실적인 손해 발생이 예상되며, 이러한 손해의 발생은 단순한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내지 법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의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무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⑤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36】 다음 중 종교의 자유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가.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 나. 공교육체계의 헌법적 도입과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 현실 및 평준화정책이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사정,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의하여 학생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헌적 소지가 강하다.
- 다.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이고,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자의 기본권적 가치에 관한 추상적 이익형량을 통하여 우선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 라. 사학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는 설립자나 학교법인의 종교적·세계관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즉 ‘종립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수업을 할 자유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마. 공교육체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그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현실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사립학교에 학생선발권을 가급적 전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바. 종립학교에 학생들이 강제로 배치되었다는 이유로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나 운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 종립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아. 기본권규정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만,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므로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문37】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그들의 사업소득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혼인이나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동사업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와 상충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한 것은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한정승인제도와 상속포기제도는 그 방식 및 법률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집단과 상속포기신고를 한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제도만을 규정하고 특별상속포기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조항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신고가 아닌 상속포기신고를 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에 따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과 기산점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한 것은,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모부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문38】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무효임을 인정하고 있다.
- 헌법전문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보장의 근거가 되므로,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으로부터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 있다.
-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현행 헌법전문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문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기부행위로 정의 중에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조항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④ 인터넷게임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는 구별되므로 수형자에 대한 집권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집권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교도소장이 그 수형자와 변호사의 집견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40】 영전의 수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영전의 수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는 사항이며 헌법은 국민에게 영전을 수여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 ②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하고 만일 이를 패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 ③ 헌법 제89조는 영전수여를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 ④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법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서훈 취소의 대상이 된다.
- 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우방원수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에 게만 수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이다.

【문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도 신뢰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교섭 단계에서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2】 다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 민법에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
-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의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3】 종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주인한다고 하여 유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③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 ④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에게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총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총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 4】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총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 ② 확정된 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 ③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잔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⑤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의사가 요구된다.

【문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상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규정은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집합건물에도 적용됨을 규정하는 것인데, 위 민법 각 규정에 따른 담보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대지부분의 권리상의 하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 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인도’는 인도의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건축 후 최초 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 6】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③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특별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⑤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당연히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7】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위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문 8】 다음 중 판례와 다른 것은?

- ①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 ②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 ③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⑤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문 9】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영리를 목적으로 율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율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②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③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율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율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10】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합의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다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11】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부부 일방의 혼인 중 제3자에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므로,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 ㉢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는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다.
- ㉣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 ① ㉠, ㉡, ㉢ ② ㉠, ㉢ ③ ㉡, ㉣
④ ㉡, ㉢, ㉤ ⑤ ㉢, ㉣

【문12】 협의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성년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 ㉢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를 부(父)로 정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할 수 있다.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조서는 양육비 지급의 집행권원이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3】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행하여진 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 ②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③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대지와 乙이 신축한 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건물을 함께 매수한 다음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위 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이 위 대지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
- ④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甲은 법정지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대지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 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문14】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것은?

- ①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②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고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소멸된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④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 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문15】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피담보채무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③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그 변경등기는 물상보증인이 이후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④ 상사시효 대상인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된 경우, 그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인수채무는 상사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다.
- ⑤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16】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 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乙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丙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丁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甲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甲은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문17】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③ A가 B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받았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A가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C에게 양도하고 C 앞으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후에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A의 채권자 D에게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이 소멸할 때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문18】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 ③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문19】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과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없다.
- ②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 ④ 피해자 손해가 200만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60만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98만원이다.
- ⑤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문20】 도급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는 지체상금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 ②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 ③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일 것이나 교환가치 차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볼 수 있다.
- ④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21】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설립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해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설립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재단법인은 제3자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란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권의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 ④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문22】 이행불능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 ②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비록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다.

【문2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 그에 관하여 민법 제261조에 의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24】 채권자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③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위 수익자 등은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문25】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시효의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 시효기간의 개시에 대한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 없다.
- ②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채권양도인이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 때로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 ④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시효기간은 개별적인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연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문26】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 ⑤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문27】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 ② 전세권이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 ④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그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28】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한 민법 제141조의 단서는 부당이익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와 달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29】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시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한다.
-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기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의 명의로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청명의인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그에게 신용불량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신용보증을 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①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문30】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은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 ②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 담보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손해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다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다.
- ③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 ④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발송인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 ⑤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문31】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문32】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순차로 제기하였는데, 乙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丙에 대하여는 丙의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한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乙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이 그 소유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후 丙이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뒤 乙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결과 丙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고, 丙의 임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 후 통정허위표시를 알게 된 丙은 그 임차권에 의하여 乙에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실 개수공사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丙이 위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甲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때에도 점유자의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에 기하여 丙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가 침탈자로부터 특별승계한 때에는 점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후 그 토지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乙뿐만 아니라 甲도 丙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3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 ㉡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
- ㉢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5】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나 공동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된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이 발생한 때,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기산한다.

【문36】 계약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질을 보유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 중기를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중기가 매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그 감가비 상당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취득한 순수입에는 목적물 자체의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수리비 등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의 순수입에서 현금자본의 투입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7】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 ㉠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기간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측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그 해지권이 인정된다.
- ㉤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부사장 등의 직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회사의 계속적 채무에 보증을 하였는데 회사 경영진 내부의 마찰이 있는데다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8】 다음 중복 등재된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이 경우 나중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③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 ④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고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로,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등기인 경우에는 멸실 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로 각 등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
- ⑤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일자나 각 회복된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나 전 등기의 원인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문39】 다음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에 따른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 ②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등기는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③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다.
- ④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문4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나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A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 경우 위 종중의 대표자 乙은 비록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 제기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乙 개인 명의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甲이 乙, 丙과 함께 X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는 乙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丁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④ 공유토지의 2/3 지분권자 甲이 다른 공유자인 1/3 지분권자 乙과 협의없이 그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고 있는 乙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으로부터 그 특정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제3자도 乙에 대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문 1】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 ②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졌고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 ③ 동업자들이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한 경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서 여러 회사가 각자 입찰에 참가하되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⑤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다른 입찰자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그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그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입찰방해미수죄로 처벌해야 된다.

【문 2】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 장소적 효력범위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1개의 행위가 현행 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현행 형법의 처벌이 구법에 비하여 중한 경우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 형벌법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 간통을 벌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민과 간통한 경우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 외국인이 한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우표를 위조하였다면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 ㉤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경하여진 경우 형의 집행을 감면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 3】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면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 ㉡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아 실제 참여하였으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참여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차용금 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 ㉣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 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 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뇌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 · 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 · 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여 乙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 ④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흥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⑤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 법 40문】

②책형

【문 5】성폭속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 판매죄에 해당한다.
- ㉡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 ㉢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가진다.
- ㉣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 가해자는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하면 간통죄도 성립한다.
-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 ① 5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6】문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담뱃갑은 사문서 등의 위조죄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세금수납영수증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현출이 가능하고 특수매체의 발달로 그 저장에 영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한다.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7】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내란죄는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 내란죄는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은 내란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 ㉣ 간첩행위는 적국에 알리기 위하여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이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도 간첩행위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8】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 날치기 수범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죄나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촉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단일한 강도죄가 성립할 뿐이고, 폭행·협박을 당한 피해자별로 강도죄가 성립하여 상상적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행위의 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이거나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9】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 ㉢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 ㉤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③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④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⑤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1】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고소를 한 목적이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었다면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
- ㉤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으므로, 면허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 ㉥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인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문12】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으로 국립병원 진료부장으로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 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다음 그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인장위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친구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결제에 사용한 다음 매출전표에 그 친구의 서명까지 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말소한 다음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B에의 매매나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원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②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위와 같은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14】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변조한 오락기 기관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락실 업주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 ㉡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남겨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다.
- ㉢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으나, 공중위생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원들은 공중위생영업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진정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보호자가 의학적 충고에 반하여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 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보호자와 전문의, 주치의 모두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 ②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용하는 역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③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고,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한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위조된 유가증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⑤ 피고인이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하였다면, 그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문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범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함으로써 이미 외관상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피해자가 각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탓으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회사들에게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무원비밀누설죄는 행위 당시 공무원이었을 것을 요하는 신분범이다.
- ㉡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법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공소장을 접수한 법원공무원이 공소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린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다.
- ㉣ 검사가 상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방해한 경우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처벌된다.
- ㉤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甲에 대한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에 앞서 증거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도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에는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2012. 12. 18. 형법개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 및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
- ㉡ 2012. 12. 18.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 ㉢ 판례는 개정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에 대한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 ㉣ 형법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 강간치상죄가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20】 결과적 가중범, 과실범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②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배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숙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호텔 객실로 유인하여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⑤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문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이를 게재하였더라도,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의 관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 ㉣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하고,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23】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 ㉡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면 법원은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피고인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계약상의 부조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한다.

- ① 가, 나, 라 ② 가, 나, 마 ③ 나, 마
- ④ 가, 라 ⑤ 라

【문25】 다음 설명 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공모하고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
- ㉡ 피고인이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 ㉢ 피고인이 허위의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변론기일 소환장 및 선고기일 소환장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게 대신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령하여 전달치 않는 방법으로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모두 사망한 경우
-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문26】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을 불가능케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하였다면 전차인의 전차장소에서의 음식점 영업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27】 형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의 규정 취지 및 해석상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한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납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도 포함한다.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선고유예 결정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5개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문28】 형법상 자격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 또는 상실되는 자격에는 피선거권이 포함되지만 선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처벌법규가 법정형으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없다.
- ㉢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 병과된 자격정지기간은 자격정지와 병과된 형의 집행일부터 기산한다.
- ㉣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상한은 15년이다.
- ㉤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2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 위조죄를 구성한다.
- ㉡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도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0】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
- ② 피고인이 권원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 열린 감을 그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수확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고속버스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하지 못한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④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각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에 따라 자동차 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문3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주죄에서 체포, 구금의 적법성은 형식적 적법성을 의미하며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결구금된 자가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 체포 또한 위법하다 할지라도 도주죄의 주체가 된다.
- ②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③ 범인이 기소증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어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자기비호의 연장에 불과하여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32】 다음 설명 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고,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 ㉡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학생회관에 침입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경우
- ㉢ 사채 이장에 앞서 당국의 신고하여야 함을 모르고 이장한 경우
- ㉣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였고, 사전에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얻은 경우
- ㉤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려 군청 산림과에 갔으나 관광지 조성승인이 났으니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군수 명의의 산림법배제확인서까지 받아 산림훼손행위를 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3】교사범 및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중범에게 뇌물 중의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에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정하여야 한다.
- ㉡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중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① ㉠ ② ㉡, ㉢, ㉤ ③ ㉡, ㉢, ㉤
④ ㉡, ㉢ ⑤ ㉢, ㉣, ㉤

【문34】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옵션트 인쇄기로 한국은행권을 위조하려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사진을 찍어 인화하였다면 통화위조 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부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준비한 경우 강간예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예비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방조한 자는 예비죄에 정한 형을 감면한다.
- ④ 간수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할 것을 준비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 ⑤ 기수의 고의로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강도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문35】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피고인이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 ④ 공휴일 또는 야간에 구치소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염화칼륨 주입행위는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하므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 ② 명정(酩酊)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한 법률상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
- ③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 ④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 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37】 다음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목적범
- ㉡ 비밀침해죄 - 침해범
- ㉢ 연소죄 - 결과적 가중범
- ㉣ 존속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 ㉤ 음화판매죄 - 편면적 대항범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8】 다음 장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그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 장물죄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에게서는 강도예비죄가 성립할 뿐 장물운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문39】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그 보도가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그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 ㉣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문4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중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②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 甲 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갔다면,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